

한구석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

2019학년도 신입학 정시 재외국민 모집요강



안양대학교
ANYANG UNIVERSITY

안양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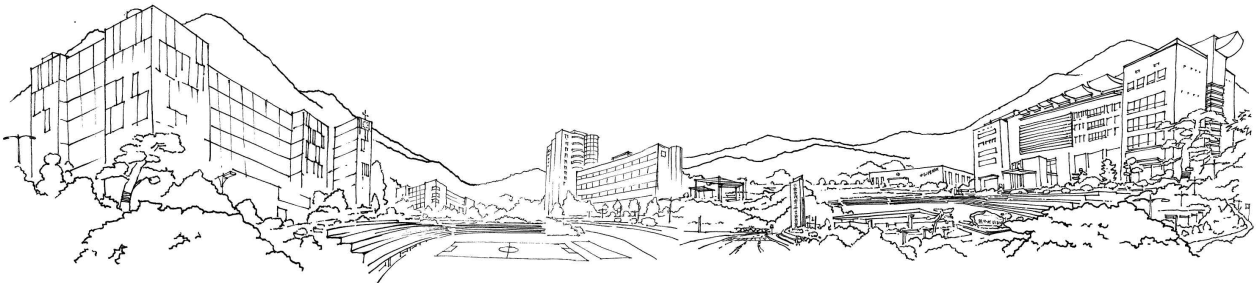
Anyang University

우리 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교육·실천하여 고매한 인격을 함양하고 모든 사람과 사회와

자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저마다의 한구석을 밝혀 나가는 아름다운 리더를 육성한다.

Always New!

사람과 사회가 행복해지는 큰 교육으로 새롭게 거듭납니다.



■ 차례 ■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
2. 전형일정	2
3. 선발원칙 및 지원방법	3
4. 수험생 유의사항	4
5. 인터넷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5
6. 서류제출 방법	6
7. 전형료 안내	7
8. 지원자격	8
9. 지원자격별 기간산정	10
10. 각종 인정기준	12
11.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배점)	13
12. 선발방법	13
13. 서류제출 안내	14
14.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17
15. 등록금 환불 안내	17

■ 각종서식

입학원서 / 자기소개서 / 재학기간 심사표 / 외국학교 현황표 / 제3국 수학사유서 /
학력조회 동의서(Letter of Agreement)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수시 미충원 인원에 따라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대학	계열	학부(과)		입학 정원	정원 외	완전 정원 외		
					재외국민 (최대선발인원)	전 교육과정 이수자 (내국인,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신학	신학	신학과		52	5	적정인원 「사범계」, 「예술학부」, 「야간학부(과)」 제외		
		사범계	기독교교육과	30	-			
	인문	인문	언어 문화 학부	국어국문학전공	120		11	
				영미언어문화전공				
				러시아언어문화전공				
				중국언어문화전공				
	사범계	유아교육과		35	-			
		예술	예술학부	공연예술전공			22	-
	음악 전공			피아노	17		-	
				성악	13		-	
				관현악	13		-	
	사회 과학	사회	글로벌경영학과		60		6	
			글로벌경영학과(야)		63		-	
			관광경영학과*		40		3	
행정학과			35	3				
행정학과(야)			30	-				
공공행정학과(강화)			30	3				
관광학과(강화)			22	2				
이공	자연	식품영양학과*		40	4			
		ICT 융합 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195	18		
			정보전기전자공학전공					
			통계데이터과학전공					
			소프트웨어전공					
			융합소프트웨어전공(강화)				35	3
			정보전기전자공학전공(야)				66	-
		도시환경바 이오 공학부	통계데이터과학전공(야)		66	-		
			도시정보공학전공		80	8		
			환경에너지공학전공					
			해양바이오공학전공(강화)*		35	3		
		도시정보공학전공(야)		33	-			
		디자인 발명창업학 부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65	6		
화장품발명디자인전공								
총 계				1,131	19명 이내	적정인원		

※ 「*」 표시는 교직과정 설치학과임

※ 「재외국민 전형(정원 외)」 선발인원은 전체입학정원의 2%인 22명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

※ 「전 교육과정 이수자(내국인,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선발인원은 제한 없음

※ 「외국인」은 모집하지 않음

※ 「사범계」, 「예술학부」, 「야간학부(과)」는 모집하지 않음

2 전형일정

※아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일 시	장소 및 안내사항
인터넷 원서접수	2018. 12. 29(토) ~ 2019. 1. 3(목) 18:00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 (p.5 인터넷 원서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참고) - http://enter.anyang.ac.kr - www.uwayapply.com 접수기간에는 24시간 원서접수가 가능하나 마감 당일은 18:00까지만 접수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4)을 스캔하여 JPG 파일로 업로드
지원자격 서류제출기간	2018. 12. 29(토) ~ 2019. 1. 3(목) 18:00까지 (공휴일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를 2019년 1월 3일(목) 18:00까지(우편물 도착기준) 안양대학교 입학관리과에 방문 또는 등기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는 책임 을 지지 않음(우편발송 부착용 겹표지를 출력 하여 사용함) / 방문제출 공휴일 제외
합격자 발표	2019. 1. 29(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http://enter.anyang.ac.kr) 에서 조회 개별 통보는 하지 않음
합격자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 고지서 출력	2019. 1. 29(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http://enter.anyang.ac.kr)에서 출력
합격자 등록금 납부기간	2019. 1. 30(수) ~ 2. 1(금) 16:00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 합격생은 반드시 본교가 정한 등록기간에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미 등록시 합격 이 취소됨

③ 선발원칙 및 지원방법

1. 지원학부(과)는 제1지망만 허용하며, 본 대학교 동일 전형에 복수지원이 불가합니다.
2. 지원자는 입학원서의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3. 입학원서에 연락처(주소와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입력)하거나 연락두절로 인하여 각종 통지가 불가능하게 되어 합격이 취소된 경우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본 대학교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원서접수 이후에 지원 자격을 검토하여 자격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5. 입학전형의 성적 및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입학전형 성적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인원과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습니다.
7. 자격 미달 또는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8. 본 대학교 캠퍼스는 안양캠퍼스 주간, 강화캠퍼스 주간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사범계학과(기독교교육과, 유아교육과) 및 예술학부, 야간학부(과)는 모집에서 제외합니다.
9. 외국인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10. 입학허용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11. 해외주재 상사 직원의 경우 해외 설치인증(허가)이 되지 않았거나 또는 해외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2. 외국학교라 함은 외국소재의 학교를 의미하며, 국내소재 외국인 학교 등은 제외합니다.
13. 월반, 조기 졸업한 자는 특례입학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외국의 학제 차이 등으로 학교 재학년수가 1개 학기(6개월 정도) 미달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14. 본 모집요강의 모든 사항은 지원자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15. 본 모집요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합니다.
16. 상기 항목 외의 사항은 본 대학교 입학전형 세부지침에 따르며 입학 후 제반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에 따릅니다.
1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입학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우1402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37번길 22(안양동) 안양대학교 아리비전센터
506호 입학관리과

Tel 031-463-1234~7 Fax 031-467-0760

4 수험생 유의사항

■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 복수지원 금지

- 수시모집 합격자(등록 후 환불자 및 총원합격 한 자 포함)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학(전문대학, 산업대학 포함)의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 이중등록 금지

-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총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총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 등록금 환불 신청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 지원자 개인정보자료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는 입학전형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입학전형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자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두 삭제됩니다.

■ 제3자 제공

- 수집된 항목 중 합격자에 한하여 신한은행에 등록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본인확인 여부

- 이 원서는 지원자 본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입학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타인작성 절대 불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 관련시스템 정보이용 제공 여부

■ 대입지원 위반자 사전예방시스템 정보이용 제공 여부

- 이 시스템은 위의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지원자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여 사전에 위반자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자격 및 전형일자 확인 여부

- 지원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일자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지원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요강의 지원자격 및 최저학력기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입 허위지원 방지와 지원자격 조작 방지에 관한 확인 여부

- 대입 허위지원을 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 지원 시 지원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나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2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합니다.
- 본교 및 타 대학에서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5 인터넷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 개인정보는 지원자의 동의하에 입학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는 본교 규정에 따라 입학 및 학사 관련 업무 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 본교는 원서접수를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 '(주)유웨이어플라이(www.uwayapply.com)'에 위탁하여 진행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성명, 수험번호, 전형유형, 지방모집단위, 출신고교명 및 졸업일, 지원자 주소 및 전화번호, 지원자 이메일, 긴급연락처, 전형료/등록금 반환 계좌번호 등

1. 입학원서 접수방법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enter.anyang.ac.kr)에서 원서접수 아이콘을 선택하거나,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 홈페이지(www.uwayapply.com)에 접속하여 '안양대학교, 검색 선택'
회원가입 및 로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지원자 본인 명의로 회원 가입 (보호자 등 타인 아이디로 원서접수 불가)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원서접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접수관련 동의서 확인 후 진행
원서 입력 및 사진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학년도 재외국민 모집요강」을 참고하여 지원자의 기본 신상정보 및 지원사항을 정확히 기재 ▪ 자격 구분에 본인의 특례 “자격구분” 등을 정확히 기입해야하며, 누락·오기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는 가족관계등록부나 여권, 외국인등록증에 따라 정확히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지원자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재외국민번호를 정확하게 입력,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앞의 여섯 자리는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뒷자리는 남자의 경우 5999999, 여자의 경우 6999999로 입력 ▪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파일(JPEG파일형식)로 업로드함
원서 입력사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료 결제 전 반드시 최종 작성 내용을 확인해야 함
전형료 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통장입금, 신용카드결제, 휴대폰결제 등을 통하여 전형료 납부 ▪ 인터넷 접수가 완료(전형료 결제)된 후에는 전형유형 및 모집단위를 변경할 수 없음
서류제출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제출 대상자는 전형유형별 '제출서류'를 아래 서류제출 기한까지 등기우편(우편발송 부착용 겹표지 출력) 또는 방문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기한 : 2019. 1. 3(목) 18:00까지(우편물 도착 기준) - 제출처 : (우)1402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37번길 22(안양동) 안양대학교 아리비전센터 506호 입학관리과 ※ 우편발송 부착용 겹표지(주소)를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유의사항

- 1) 원서접수는 인터넷 상으로만 가능합니다.
- 2)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전형유형과 모집단위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3) 지원자와 보호자의 주소, 전화번호는 전형기간 중 사용되므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변경시 즉시 본교 입학관리과(☎ 031-463-1234~7)로 통보해야 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4) 입학원서 접수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해당자) 전형당일 지참해야 합니다. 수험표 분실 시 접수한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재출력 할 수 있습니다.
- 5) 인터넷으로 입력한 내용과 사실이 상이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6) 전형료 결제(입금) 후 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접수가 완료됨을 의미합니다.

⑥ 서류(원서포함) 제출 방법

1. 제출 기한 및 제출 방법

- 1) 등기(특급) 우편 발송 : 2019년 1월 3일(목) 18:00 도착분까지
(우:1402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37번길 22(안양동) 안양대학교 아리비전센터 506호
입학관리과
 - 2) 방문 제출 : 2019년 1월 3일(목) 18:00까지(공휴일 제외) 안양대학교 아리비전센터 506호
입학관리과로 제출
- ※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내 원서보관함→출력물→제출 서류봉투 표지 출력'에서 표지를 출력하여 봉투에 부착한 후 해당란(□)엔 '√' 표시하고 아래와 같이 준비하여 발송하여야 함
- ① 접수된 입학원서를 출력(A4용지)하고 제출서류(각종 해당 양식)를 봉투에 동봉하여 제출
 - ② 인터넷 원서접수 문의처 : (주)유웨이어플라이(TEL.1588-8988)

7 전형료 안내

전형유형	전형료	비고
전 모집단위	100,000원	접수 수수료 학교 부담

※ 전형료 반환기준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와 수험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서접수 후에는 지원 사항을 취소 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전형료 반환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1. 고등교육법 시행령 관련 반환 기준(제42조3항)

전형료 반환 기준	반환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는 자에 한함) 	전형료 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시자의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액 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교의 귀책사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간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전형료 전액

※ 상기 전형료 반환 사유 이외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본교 입학처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전형료 일부를 반환합니다(단순변심, 전형 일정 중복,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충족에 의한 포기, 결시는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구분	반환 금액
원서접수 마감 전	전형료 전액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경과 전	전형료의 70%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경과 이후 ~ 전형 1일 이전	전형료의 50%
전형일 이후	반환하지 않음

2. 입학전형 관련 수입, 지출에 따른 잔액 발생 시 반환 기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응시자가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합니다.
- 전형료 반환방법은 원서작성 시 대학 직접 방문 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 계좌이체를 선택할 시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8 지원자격

1. 기본 지원자격

12년 이상의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 다음의 유형별 지원자격, 외국학교 인정기준, 재학기간 인정기준, 지원자격별 부모 최저 외국 체류기간에 관한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유형별 지원자격

구분	유형	지원자격	외국학교 재학기간
2% 정원 외	영주교포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영주권 발급 받은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비연속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3년 이상)	1.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이란 외국의 고등학교과정(2년 전체)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하여 연속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함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비연속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3년 이상) ※ 상사직원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 언론기관특파원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비연속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3년 이상) ※ 공무원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비연속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3년 이상) ※ 외국정부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 기타 국가기관·지방정부·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간의 국제 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구분	유형	지원자격	외국학교 재학기간
2% 정원 외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비연속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3년 이상)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기타 적법한 사유(절차)로 외국에 거주(근무)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비연속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3년 이상) ※ 부모의 해외거주 사유(예) : 자영업, 현지 회사 근무, 해외 선교 활동, 해외 파견 교직원 등	
완전 정원 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내국인)	외국에서 12년 이상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귀화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인 자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외국에서 이수한 자
	북한 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한 자	시도교육감이 학력 심의위원회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자

※ 해외근무자의 근무형식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됩니다.

9 지원자격별 기간산정

1. 기간 산정기준(2019년 2월 28일까지)

구 분	산 정 기 간
재학기간	<p>학년(Academic Year) 기준이며,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합니다.</p> <p>재학기간은 필요한 경우 학기 단위로도 인정합니다. 단, 해당 학기 수업시작부터 종료까지 재학하여야 합니다.</p> <p>※ 재학기간의 인정기준</p> <p>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연속으로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이란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2년 전체) 또는 고등학교 과정(1년)을 포함하여 연속으로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의미함 ▪ 단,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외국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재학한 것으로 간주 ▪ 재학기간은 해당국의 학제 등을 고려하여 연도가 아닌 학기 기준으로 해석 예) 중고과정 연속 3년 이상 → 해당 국가가 2학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6학기 이상,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9학기 또는 12학기 이상 등 ▪ 학생의 지원자격이 되는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보호자의 근무 또는 영주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의미함
해외영주기간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해외근무기간	<p>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p> <p>예)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로 지원한 학생 보호자의 배우자가 출입국이 빈번하여 출입국증명서상의 해외체류기간이 2년 미만으로 산출된다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의 해외거주기간이 2년 이상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재외국민 최저 해외체류기간에 위배되어 지원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학생도 마찬가지로 방학 등의 이유로 출입국이 빈번하여 출입국증명서상의 해외체류 기간이 2년 미만으로 산출된다면 지원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p>
해외거주기간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
해외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해외 거주·체류 기간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근무확인서류, 재학기간증명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산정합니다.

2. 최저 체류기간

구분	기간(년)								비 고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영주교포	2	2	2		2	2	2	2	1. 외국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고등학교 과정 1년(2학기)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2년(4학기) 이상 재학한 자 2.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에 계속하여 2년 이상 재학한 자
· 해외근무 상사직원자녀 ·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2	2	2	2	2	2	2	2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2	2	2	2	2	2	2	2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2	2	2	2	2	2	2	2	
전 교육과정 이수자(내국인)	12	12	12	-	-	-	-	-	외국의 초·중·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1) 해외근무자(상사직원, 공무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근무 형식은 외국에 상근하는 형태만 인정합니다.(유학, 교육, 연수, 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2) 상사직원은 배우자 및 자녀와 동시에 귀국하지 않아도 되며, 귀국 후 동일국에 재출국하는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3) 상사직원 및 해외근무자 자녀의 경우, 부모의 외국 근무기간(인사발령 기준)내에서 재학한 외국 재학기간을 지원 자격을 위한 외국 재학기간으로 인정합니다. 4) 기타 재외국민 자녀의 경우, 부모의 체류기간은 학생의 외국 재학 기간 내에서만 인정합니다.									

10 각종 인정기준

1. 외국학교 인정기준

- 1) 해당국의 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만을 인정하며, 유아원·유치원 등 초등 학교 전단계 과정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외국학교 교육과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2) 국내 소재(외국군 기지 포함) 외국인 학교 및 중국 내의 정규고등학교를 제외한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전문)학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3) 해당 학년에 정상적으로 재학한 기간 중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합니다.
- 4) 초·중·고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는 초·중·고 12년 과정의 기간 중 부족한 학교과정의 기간만큼 당해국 대학 과정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합니다.
- 5) 우리나라 학제와 외국의 학제가 다른 경우 우리나라 학제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합니다.

구 분	교육연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한 학교 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 6) 원칙적으로 부모의 거주(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합니다. 단, 부모 거주(근무)국의 지역, 종교 등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부모의 거주(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를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2. 재학기간 인정기준

- 1) 학제가 다른 국가로 전·편·신입학하는 과정에서 1개 학기 범위 내에서 낮추거나 높이는 경우는 인정합니다. 단, 고등학교 전 과정 이수시까지 학제가 다른 국가로 전·편·신입학한 학기 중에서 높여서 전·편·신입학한 학기수가 낮추어서 전·편·신입학한 학기수 보다 1개 학기를 초과할 경우는 고등학교까지 전과정을 이수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2) 외국학교 간 재학학기가 중복된 경우는 외국학교 재학년수에서 중복된 학기를 1개 학기 이수 기간으로 보며, 학제차이로 1개 학기를 초과하여 국내와 국외의 재학학기가 중복된 경우는 1개 학기를 초과한 학기는 국내 학교를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학제차이로 1개 학기를 초과하여 중복된 학기 중에서 이 중복된 학기과정이 하급학기를 보충하는 학교과정인 경우는 이를 외국학교 재학기간으로 인정하며, 이 과정의 중복된 과정은 중복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3) 월반 또는 조기 졸업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외국학교와의 학제차이 등으로 재학년수가 12년에 미달되는 경우 1개 학기 범위 내에서 예외로 인정합니다.
- 4)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재학기간이 부족한 국내·외 검정고시 출신자는 해당학교 과정 이수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5) 학생의 외국학교 자격인정 재학기간은 주된 보호자의 해당국 거주(근무)기간 내에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6) 외국학교의 재학이 계속되는 경우 방학기간은 재학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단, 국내학교로의 전학일자 이후의 방학기간은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7) 재학기간은 필요한 경우 학기 단위로도 인정합니다. 단, 해당 학기 수업시작부터 종료까지 재학하여야 합니다.
- 8) 외국고교 졸업예정인 경우 재학기간 산출은 졸업예정일까지로 합니다.
- 9) 유급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10)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 해외 소재 외국 학교와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를 번갈아 가며 재학하였을 시 해외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기타 사항

- 1) 특례자격 인정기한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2) 국적관련법이 인정하는 이중국적자의 지원 자격을 인정합니다. 단, 외국인전형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3)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발급일자 유효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4)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양육권과 사실관계를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 자격 및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계산합니다.

11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전형 유형		서류평가
재외국민	영주교포	100점 (100%)
	해외근무상사직원자녀	
	해외근무공무원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전 교육과정 이수자(내국인)		
북한이탈주민		

※ 중·고교 성적, 자기소개서, 수상실적, 어학능력 봉사활동 등 교내·외 활동, 체류국가 대학입학시험 성적 등 각종 실적 증빙자료를 종합 심사합니다.

12 선발방법

1. 재외국민전형 : 전형 성적에 따라 지원 모집학과와 관계없이 모집단위 모집인원 만큼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모집학과별 최대선발인원 이내에서 선발합니다.
2. 전 교육과정 이수자(내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전형 : 서류평가 취득 총점이 우리대학이 정한 일정기준 이상자 전원 선발합니다.(외국인 모집하지 않음)
3. 별도의 최저학력기준은 두지 않습니다.
4. 동점자 처리기준

전형 유형		동점자 처리 기준
재외국민	영주교포	동점자 발생 시 우리대학 2019학년도 전형세부지침에 의해 처리합니다.
	해외근무상사직원자녀	
	해외근무공무원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기타재외국민의 자녀	
전 교육과정 이수자(내국인)		동점자 전원 선발
북한이탈주민		

13 서류제출 안내

제출서류명	영주 교포	해외근무 상사직원· 공무원·외 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유치 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기타 재외국민 의 자녀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 이탈 주민
					내국인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	●	●	●	●	●	●
자기소개서(본교소정양식)	●	●	●	●	●	●	●
재학기간 심사표(본교소정양식)	●	●	●	●	●	●	●
외국학교 현황표(본교소정양식)	●	●	●	●	●	●	●
고등학교 졸업(재학·예정) 증명 (아포스티유확인서 혹은 재외교육기관 영사확인서)	●	●	●	●	●	●	◎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아포스티유확인서 혹은 재외교육기관 영사확인서)	●	●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국적취득외국인은 한국국적과 취득한 외국 국적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여권 사본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주민등록말소등본(호(제)적등본)	●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호(제)적 등본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보호자 재직증명서 (본사발행 외국근무경력기간기재)		●	●	●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세납부이력(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 (현지 자영업자)				◎			
영주권 사본	● (부·모· 학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제3국 수학 사유서		◎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또는 통일부 교육보호대 상자 증명서(시군구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
학력증명서(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 한 자에 상응한 학력 증명서)							●

1. 지원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아래 표의 ●(필수 제출 서류),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할 서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순서대로 철합니다.
2.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재학기간 심사표, 외국학교 현황표 및 위 항에서 준비한 유형별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서류봉투에 넣습니다.
3. 등기우편이나 택배로 발송하는 경우 서류 봉투 겉면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등기우편 및 택배 : (14028)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37번길 22(안양동) 안양대학교 입학관리과
 - 방문제출 : 안양대학교 입학관리과(아리비전센터 506호) 18:00까지 / 공휴일 제외
4. 제출기한 : 2019. 1. 3(목) (마감당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5. 입학원서, 재학기간 심사표 및 외국학교 현황표, 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 시 작성해서 출력하는 것만 인정이 되므로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입학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출서류상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8.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서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거나 원본과 사본 모두를 지참하여 본교 입학관리과에 방문 후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본 제출자는 합격 후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최종합격자 중 졸업예정자는 입학일 전까지 고교 졸업증명서를 입학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최종합격자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안내
 - 제출대상 : 2019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최종합격자
 - 제출기한 : 2018년 12월 14일(금)
 - 발급대상서류 : 해외 초·중·고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 상기의 서류에 대하여 당해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된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 소재국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11. 지원자의 제출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지정된 기간 안에 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시 일정상 부득이하게 서류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합격자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3. 우편배달 사고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일 내에 도착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해서는 본교에 책임이 없습니다.

재외국민 서류 제출 관련 아포스티유 협약 안내

■ ‘아포스티유 협약’ 이란 ?

- 명칭 :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Legalization)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 간 협약

■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방법

- 외국에서 초·중·고등교육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하고 귀국하여 대학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가, 외국에서 재학·졸업하였던 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발급 받은 후,
나. **외국 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당해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1) 아포스티유확인서 발급기간은 해당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입니다.
- 2) 아포스티유협약국이 아닌 경우 기존처럼 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다.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대상

- 1) 국·공립학교 발행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 2) 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중 해당국 공증기관이 공증한 문서
- ※ 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는 공증 받은 후에 아포스티유확인서를 발급 신청합니다.

■ ‘아포스티유 확인서’ 효력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협약가입국 공문서(공증문서 포함)는 국내에서 우리나라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따라서, 은행, 관공서, 회사, 법률사무소, 학교 등 외국공문서를 자주 대하는 기관 또는 업체는 협약가입국의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공문서(공증문서)에 대해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른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문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합니다.
- 외국공문서에 부착된 아포스티유의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업체는 해당국가 주한공관 또는 외교통상부에 해당 아포스티유의 일련번호, 서명자 등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2018. 3. 30 현재)	
지역	국 가 명
아시아, 대양주 (17개국)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셜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유럽 (52개국)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기스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1개국)	미국
중남미 (28개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아프리카 (12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튀니지
중동 (4개국)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협약에 의한 APOSTILLE 확인서 양식	
APOSTILLE (Convention de La Haye du 5 octobre 1961)	
1. Country : 국가 This public document	
2. has been signed by (①)	
3. acting in the capacity of (②)	
4. bears the seal/stamp of (③)	
Certified	
5. at (④)	6. (⑤)
7. by (⑥)	
8. No (⑦)	
9. Seal/stamp (⑧)	10. Signature (⑨)
① 문서발급자의 성명, ② 문서 발급자의 직위, ③ 문서발급기관, ④ 발급장소, ⑤ 발급일자, ⑥ Apostille 발급 기관, ⑦ 발급번호, ⑧ Apostille 발급기관의 스탬프, ⑨ Apostille 발급 담당자의 서명	
※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협약의 규정에 따라 배경 디자인은 상이할 수 있으나 확인서(Apostille) 서식은 협약가입국에서 동일한 서식을 사용	

※ 아포스티유 협약과 관련한 자료는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인 www.0404.go.kr에서 자세히 알 수 있으며, 영사콜 센터(02-2100-7500, 02-3210-040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14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1. 합격자 발표

- 수험생의 합격 확인은 개별 통지하지 않으므로 본교 입학 홈페이지(<http://enter.anyang.ac.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 또는 확인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등록금 납부 안내

- 1) 납부기간 : 2019. 1. 30(수) ~ 2. 1(금) 16:00까지
- 2) 납부금액 : 추후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
- 3) 납부장소 : 전국 금융기관
- 4) 등록금고지서 : 2019. 1. 29(화) ~ 2. 1(금)까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http://enter.anyang.ac.kr>) 에서 출력합니다.

※ 모든 합격생은 반드시 본교가 지정한 등록기간 및 장소에서 등록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미등록시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15 등록금 환불 안내

1. 등록금을 납부한 자가 등록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9. 2. 14(목) 20:00까지 본교 입학관리과(Tel 031-463-1234~7 Fax 031-467-0760)로 사전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신청절차 : 본교 입학 홈페이지(<http://enter.anyang.ac.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1) 로그인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 2) 본인인증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를 원서접수 시 입력한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 (계좌번호가 틀릴 경우 환불 불가)
 - 3) 환불사유 입력 : 포기사유(타 대학 합격 등) 입력
 - 4) 로그아웃
3.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 반드시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 2) 오후 4시 이후 환불신청은 다음날 오전 중에 처리되며, 금요일 오후 4시 이후 접수 분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중에 환불처리 됩니다.
단, 환불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 오전 중에 환불처리 됩니다.
 - 3) 환불완료 확인은 동일한 메뉴에 접속하여 확인합니다.
4. 등록금 환불 신청기한이 경과된 이후의 환불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 1호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적용합니다(학기 개시 후 환불자는 자퇴 처리하고 등록금 환불은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합니다).
5. 기타문의 : 입학관리과 Tel 031-463-1234~7 Fax 031-467-0760



2019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원서

▣ 정 시

										수험번호													
지원자	성 명	[한글]					[영문]					사 진 (3cm × 4cm) ※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성 별	남 [] / 여 []					국 적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본교지망학부	안양[] / 강화 [] 캠퍼스					학 과																
	전적 고등학교 현황	고교명	[한글]					[영문]															
		고교주소																					
		졸업일	년 월 일					졸업[] / 졸업예정[]															
	최저 한국어능력기준	자 격	▪ 없음																				
		기관명						급 수	[] 급		취득일자	년 월 일											
	지원자 주소	□□□□□																					
지원자격구분	재 외 국 민																						
	<input type="checkbox"/> A	영주교포					<input type="checkbox"/> E	유치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자녀															
	<input type="checkbox"/> B	해외근무상사 직원 자녀					<input type="checkbox"/> F	기타 재외국민 자녀															
	<input type="checkbox"/> C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input type="checkbox"/> G	전 교육과정 이수자(내국인)															
	<input type="checkbox"/> D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input type="checkbox"/> H	북한이탈주민															
전형기간 중 연락처	휴대폰	[] -					전 화	[] -															
	E-mail																						
보호자	성 명						지원자와의 관계																
	보호자 주소	□□□□□																					
	연락처	[] -					직 업																
	근무처						직 위																
등록금 반환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본인은 귀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지원자 [서명] </div>																							

※ 한국어로만 작성

수험 표

2019학년도 재외국민 신입학									
수험 번호									
성명	[한글]								
	[영문]								
재 외 국 민									
<input type="checkbox"/> A	영주교포	<input type="checkbox"/> E	유치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자녀						
<input type="checkbox"/> B	해외근무상사 직원 자녀	<input type="checkbox"/> F	기타 재외국민 자녀						
<input type="checkbox"/> C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input type="checkbox"/> G	전 교육과정 이수자						
<input type="checkbox"/> D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input type="checkbox"/> H	북한이탈주민						
<p>안양 () / 강화 () 캠퍼스</p> <p>_____학과</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50px; height: 100px; margin: 20px auto; 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p style="margin: 0;">사 진</p> <p style="margin: 0;">[3cm × 4cm]</p> </div>									
안 양 대 학 교									

상기 수험표는 면접시에 지참하여야 함

<서식 1> 견본

※ 본 양식은 인터넷 원서접수시 작성해서 출력하는 것만 인정이 되므로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지 말 것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기소개서

지원자 정 보	전형유형		지원학과(부)	
	수험번호		출신고교	
	성 명		출신고교 소재국가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입력기간 : 2018년 12월 29일(토)~2019년 1월 3일(목) 18:00까지 /별도 출력하여 제출하지 않음
2.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지정한 분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500자 이내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기소개서는 중요한 전형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제출한 자기소개서는 유사도 검색자료로 활용됩니다.
5. 우리대학이 자기소개서 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지원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별도 지정일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6. 자기소개서 내용 중 허위사실 기재, 표절, 대리작성, 위조서류 제출 등 기타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합격 및 입학 취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약약 서약 [(□안에 √ 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은 이 자기소개서를 직접 작성하였음
2. 본인은 귀교가 자기소개서와 관련하여 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것임
3. 본인은 이 자기소개서에 고의적인 허위 사실 기재, 대리 작성, 기타 부적절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불합격,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임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동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안양대학교 총장 귀하

1. 해외 수학과정(중·고교)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하여 배우고 느낀점을 중심으로 기술 하세요. [500자 이내]

2. 다음 두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안에 로 표시한 후 답하세요. [500자 이내]

자신이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며,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어떤 부분이 성장하였는지 기술하세요.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몰입해 본 활동은 무엇이며, 그 활동을 통해 자신이 성장한 부분은 무엇인지 기술하세요.

3. 지원 학과(부)에 진학하기 위해 기울인 학업적 노력과 다양한 활동(리더십, 봉사, 동아리, 연구, 취미, 기타활동)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500자 이내]

4. 입학 후 학업계획과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기술하세요. [500자 이내]

〈서식 2〉 견본

※ 본 양식은 인터넷 원서접수시 작성해서 출력하는 것만 인정이 되므로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지 말 것

수험번호	*	2019학년도 정시모집 재외국민 전형 재학기간 심사표
------	---	--------------------------------------

성 명		생년월일		국적		연락처	Home :	HP :									
자 격 구 분	<input type="checkbox"/> 영주교포자녀 <input type="checkbox"/> 상사직원의 자녀 <input type="checkbox"/> 공무원의 자녀 <input type="checkbox"/> 외국정부,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input type="checkbox"/> 유치과학기술자, 교수요원 자녀 <input type="checkbox"/> 기타재외국민 자녀(<input type="checkbox"/> 현지법인 <input type="checkbox"/> 자영업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input type="checkbox"/> 내국인)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학 교 명(영문)	재학기간		학교소재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출국기간 (방학기간 포함)
	기 간	재학년수	국가명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	년 개월															~
	~	년 개월															~
	~	년 개월															~
	~	년 개월															~
	~	년 개월															~
	~	년 개월															~
	~	년 개월															~
고등학교까지 총재학기간	년 개월	전체외국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중·고과정 외국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국내고교 재학기간				년 개월				

구 분	외국거주기간		소재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특이사항
	기 간	거주년수	국가명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부 (父) 성 명 ()	~	년 개월															
	~	년 개월															
	~	년 개월															
모 (母) 성 명 ()	~	년 개월															
	~	년 개월															
	~	년 개월															

위 기재 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_____ (인) 지원자와의 관계 :

〈서식 3〉 견본

※ 본 양식은 인터넷 원서접수시 작성해서 출력하는 것만 인정이 되므로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지 말 것

수험번호		2019학년도 정시모집 재외국민 전형 외국학교 현황표
------	--	--------------------------------------

성 명		생년월일		국적		연락처	Home :	H-P :
자 격	<input type="checkbox"/> 영주교포자녀 <input type="checkbox"/> 상사직원의 자녀 <input type="checkbox"/> 공무원의 자녀 <input type="checkbox"/> 외국정부,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input type="checkbox"/> 유치과학기술자, 교수요원 자녀							
구 분	<input type="checkbox"/> 기타재외국민 자녀(<input type="checkbox"/> 현지법인 <input type="checkbox"/> 자영업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input type="checkbox"/> 내국인)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학교명	국가명	소재지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홈페이지	FAX	비 고

- ※ 재학한 외국소재 학교를 심사표에 기재한 순서대로 기재
- ※ 학교명 및 주소는 영문으로 정확히 기재
- ※ 전화번호 및 Fax 번호는 국가코드, 지역코드를 포함하여 기재

제3국 수학사유서

수험번호		성명	
지원학과			
전화번호		휴대전화	

※ 학생의 수학국가가 보호자의 근무국과 상이할 경우 그 사유를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근무국가		학생 수학국가	
보호자의 해외근무기간		학생의 해외수학기간	

※ 특례기간에 해당하는 보호자의 근무국가와 학생의 수학국가가 복수일 경우 각각의 국가명과 국가에서의 수학기간을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3국 수학 사유	수학사유 심사후 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 [인]

본인 : [인]



ANYANG UNIVERSITY

Office of Admission, Anyang University
22 Samdeokro 37beon-gil, Manan-gu, Anyang-si, Gyeonggi-do, Korea

Tel 82-31-463-1234~7
Fax 82-31-467-0760

LETTER OF AGREEMENT

To whom it may concern :

I attended (* _____).

I have applied to Anyang University in Anyang, Kyong-gi, Korea for the 2019 academic year.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request your full assistance to Anyang University when they contact you regarding verification of enrollment and transcripts.

Name : * _____ Signature : * _____

Date of birth : * - -

Date of admission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 * - -

Date of graduation (transfer to another school) : * - -

Date : - -

* 지원자는 재학한 해외학교 수만큼 본 양식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일자 표기 Example) 07 - 12 - 2018
(월:M) (일:D) (년:Y)